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라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 학교”를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설립 기준, 학칙, 학급편성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4 신설 등).

II. 검토의견

안 제60조의4제1항에서는 온라인학교를 정의하고, 현행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제1항, 제8조(학교 규칙)제2항, 제24조(수업 등)제4항,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제2항·제3항,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제1항을 온라인학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안 제60조의4제2항에서는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급 편성,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생이 없이 운영되는 특수한 형태의 학교로서, 현행법에서 소속 학생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제17조(학생자치활

동)1), 제18조(학생의 징계)2), 제25조(학생 생활기록)제1항3), 제26조(학년제)4),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5), 제32조(기능)제1항6), 제60조(각종학교)제3항7)이 적용 제외될 필요가 있어 이를 명시하고, 온라

- 1)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2)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4)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5)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7)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인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 설>	제60조의4(온라인학교) ① 소속된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u>학급 편성</u> ,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온라인학교) ① 소속된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u>제17조,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60조제3항</u>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u>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간,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u> ,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제60조의4제1항에서는 온라인학교를 “소속된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온라인학교가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학교⁸⁾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를 정의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8)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 시도별 온라인학교 운영 현황 >

~'23.9.	'24.3.	'24.9.	'25.3. (예정)	'25.9. (예정)
경남, 대구, 인천, 광주	전북	대전, 강원, 충북, 제주	서울, 울산, 경기, 경북, 충남, 전남, 부산	세종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미 설립
·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과조치를 둘 필요
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주서에 반영함.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화 실)